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7 선고 2019가단522944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현중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명

담당변호사 김준성

변론 종결2021. 3. 17.

판결 선고2021. 4. 7.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한 2018. 7. 18.자.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는 2014. 12. 1. 채무자 C(이하 '채무자'라고 한다)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 2022. 12. 30., 이율 연 6.7%, 연체이율 연 9.7%로 정하여 대여해 주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채무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차전341445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 7. 19. '채무자는 원고에게 21,824,628원과 그 중 19,837,372원에 대하여 2019. 7. 10.부터 2019. 8. 5.까지는 연 9.7%의, 그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9. 8. 5. 채무자에게 송달되었으며, 2019. 8. 20. 확정되었다.

나. 채무자의 무자력 초래

채무자에게는 2019. 9. 18.경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채무(단위: 천 원)가 있었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9 지분(아버지인 D 소유였는데, 2018. 7. 18. 사망함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상속받은 지분)이 유일한 재산이었는데, 채무자는 여동생인 피고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처분을 하고, 2018. 11. 15. 피고로 하여금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A	서울<본>	2018-09-27		19,837	19,837		대출금연체
E	본점	2017-03-02		17,000	17,000		대출금연체
F	여신관리부	2016-10-04		65,599	46,599		대출금연체
G	서울<본>	2016-09-28		5,250	5,249		대출금연체

다.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내지 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채무자는 D이 2018. 7. 18. 사망하여 공동상속한 별지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로 자신의 상속분을 전부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하고 2018. 11. 15. 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채무자의 이러한 행위는 일반채권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라. 채무자 및 피고의 악의

채무자는 자신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됨으로써 일반채권자를 해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볼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마.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채무자는 사해행위로서 자신의 법정상속분 2/9를 피고에게 이전한 것이므로 원인행위를 취소함과 아울러 원상회복방법으로 피고로부터 위 지분을 채무자 명의로 이전하여야 할 것이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채무자가 특별수익자로서 상속분이 없는지 여부

1) 피고의 주장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상속분의 산정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는 재산의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채무자의 경우 2007. 5.경부터 2017. 1.경까지 생전에 D으로부터 수시로 현금을 생전 증여받은 금액이 86,100,000원에 달하였던 반면, 별지 부동산 가액은 199,000,000원으로 이 가액에 채무자에 대한 증여액을 더하면 285,100,000원이고 이에 대한 채무자의 상속분 2/9를 계산하면 63,355,555원이므로 결국 채무자는 이미 생전 증여로 상속분 이상을 받은 것이다. 따라서 채무자는 특별수익자로서 사실상 상속분이 없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채무자가 D으로부터 생전 증여받은 것이라고 피고가 제출한 자료(을 제2호증)를 보면 전부 D과의 거래가 아니라 피고와 채무자 사이의 거래가 섞여 있는 점, 채무자는 2000. 7. 1. 보험회사에 입사하여 2016.경까지 상당한 급여 소득을 받았을 뿐 아니라 2015.경에는 서울 지역에 상당한 부동산을 소유하다가 처분한 이력이 발견되므로(갑 제10 내지 14호증), D으로부터 현금증여를 받을 이유가 없는 점 등의 정황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금전 거래 내역을 공동상속재산에 포함시킬 채무자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인지 여부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피상속인 살아생전에 피상속인과 함께 동거하면서 2011년 이후 매달 부모님의 생활비를 지급하면서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미 수십 년 전에 분가하여 일가를 이루고 사는 오빠인 채무자의 채무상황을 전혀 알 수 없었고, 그저 오빠들이 막내여동생이자 미혼으로 있는 피고를 배려하고, 피고가 앞으로도 홀로 남은 어머니를 잘 모시고 살라는 의미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받아들였던 것으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2) 판단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어머니 H에게 여러 차례 금원을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금액이 일정하지 않고 시기도 부정기적인 점에 비추어 생활비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른 원인에 기한 금전거래로 보인다. 또한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채무자 사이에도 여러 차례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거래내역에 피고와 채무자의 가족관계까지 고려하면 피고로서는 채무자의 재정상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과 증거만으로는 악의 추정을 깨트리기 부족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박성인

별지